

의안번호 제48호

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7. 12.

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⁴⁸호 제출연월일: 2018. 7. 12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O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되어있음.
- O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일치되 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"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"를 "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"로 개정함
- 나. "제9조"를 "제10조"로, "농지개량 사업"을 "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"으로 개정함.(안 제1조)
- 다. "농지개량 사업"을 "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"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.(안 제2조) 제2조제1호 중 "구획정리사업(경지정리)"을 "경지정리사업"으로 개정함. 제2조제4호 중 "구획정리사업"을 "경지정리사업"으로 개정함.
- 라.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"농지개량"을 각각 "농업생산기반 정비"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장"을 "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단서 중 "사무소"를 "읍·면·동"으로 하고, "전항"을 "제3항"으로 개정함.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- (3) 규제 심사: 해당없음
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8. 02. 22. ~ 2018. 03. 14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(6)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농촌마을지원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"를 "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제9조"를 "제10조"로, "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를 "「농어촌정비법」"으로, "논산시장(이하 "논산시장"이라 한다)를 "논산시장"으로, "농지개량 사업"을 "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지개량 사업"을 "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구획정리사업"을 "경지정리사업"으로 한다.

1. 경지정리사업

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"농지개량"을 각각 "농업생산기반 정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장"을 "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사무소"를 "읍·면·동"으로 하고, "전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법"을 "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한다)"으로 하고, "농지개량"을 "농업생산기반 정비"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희망마을건설과장	박 찬 택
안	희망마을팀장	김 영 천 (746-6181)
자	담 당 자	최 제 용 (746-6183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</u>	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어촌정</u>	제1조(목적) <u>농어촌정비법</u>
비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9조	제10조
의 규정에 따라 <u>논산시장(이하"</u>	<u>논산시장</u>
<u>시장"이라 한다)</u> 이 시행하는 <u>농</u>	<u></u>
<u>지개량 사업</u> 을 효율적으로 수행	업생산기반 정비사업
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– .
제2조(사업의 법위) 이 조례에 의	제2조(사업의 법위)
하여 시행하는 <u>농지개량 사업</u> 의	<u>농업생산기반 정</u>
범위는 다음과 같다.	<u>비사업</u>
1. 구획정리사업(경지정리)	1. 경지정리사업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<u>구획정리사업</u> 에 필요한	4 <u>경지정리사업</u>
사항	
제4조(일시 이용지의 지정) ① <u>농</u>	제4조(일시 이용지의 지정) ① <u>농</u>
<u>지개량</u> 사업 시행자는 <u>농지개량</u>	<u>업생산기반 정비</u> <u>농업생</u>
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	<u>산기반 정비</u>
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	
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③<u>농지개량</u>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, 임차권 또는 사 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 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 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<u>사무소</u>에 게시하여 전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 람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0조(권리변동등의신고의무) ① 점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<u>농지개량</u>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소재,지변,지목,지적,가옥,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
③농업생산기반 정비
4
논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
다)
<u>읍·면·동</u>
- <u>제3항</u>
세10조(권리변동등의신고의무) ①
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
<u>한다)농업생산기반 정비</u>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O 해 당 없 음
- 2. 비용추계결과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O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O 농어촌정비법

제9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 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 촌공사(이하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「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.

제16조(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

- 록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
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
- 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
- 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
-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 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고,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 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 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- 1.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
- 2.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
-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·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